

# 2018년도 대전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2018년도 대전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5일

대전광역시장

##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계급	분야	선발예정 인원(명)				시험과목	비고
			계	남자	여자	양성		
계			103	91	11	1		
공개경쟁 채용시험	지방 소방사	일반소방	57	51	6		(필수3)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경력경쟁 채용시험	지방 소방사	구급	13	8	5		(필수3)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생활영어 :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구조	11	11				
		자동차운전	15	15				
		전산	2	2				
		화학	3	3				
	지방 소방교	운항관리사	1	1				
지방 소방경	법무	1	-	-	1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필기시험 면제		

※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는 붙임 2, 3, 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시험단계 및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법무 분야 제외)

1) 시험시간

● 공개경쟁시험 10:00~11:40 (100분), ● 경력경쟁시험 10:00~11:00 (60분)

2) 배 점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3) 문제형식 : 4지 선택형 20문항

4)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 위탁출제

- 5) 시험문제 공개여부 : 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책 회수
- 6) 합격자 결정방법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2명 이내는 3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 7) 선택과목의 득점 산출 방법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적용하여 조정점수로 산출하며, 선택과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공개하지 않음.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법무 분야 제외)

- 1) 시험종목 : 6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 2) 배 점 : 각 종목별 10점, 총점 60점 만점 / 【붙임5】 참고
  -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채점표 적용함.
- 3) 측정방법 :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별표 4를 적용함 / 【붙임6】 참고
- 4) 합격자 결정방법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

◀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 ▶

- 가)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10% 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 함
- 나)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는 【붙임7】 참고
- 다)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붙임8】 참고
  - 응시자는 금지약물, 금지방법, 응시자 본인 복용약물의 금지약물 해당여부 및 약물의 지속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도핑테스트 판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 라)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 판정 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음.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인적성검사 및 서류전형

- 1) 신체검사 방법 :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문에 지정하는 병원에서 실시하며 검사 수수료는 응시자가 개별 납부함.
- 2) 신체검사 합격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제6조 제3항 관련 별표 3에 따름 / 【붙임9】 참고
  - ※색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응시하여 주기 바람.

-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 등 재검사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전일까지 최종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3) 인·적성검사 실시(「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6조 제1항 제4호)

-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소방공무원으로서 인성, 적성을 관계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는 면접시험에 활용함.**

### 4) 서류전형 :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 요건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제출서류에 의하여 응시자격요건, 경력, 가산특전 등에 대해 적합여부 심사

##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1) 면접방법 : 제1단계(집단면접)와 제2단계(개별면접)로 구분하여 실시함.

- 제1단계 집단면접에서는 토론 면접을 병행하여 평가함.

### 2) 면접점수 : 제1단계 30점, 제2단계 30점 만점으로 함.

### 3) 합격자 결정방법(「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3항)

- 제1단계 집단면접과 제2단계 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해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함.

## 마. 최종합격자 결정

### 1) 단계별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 중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함.

※ 【법무분야】는 면접시험 성적 100% 고득점자 순 결정

### 2)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3 응시자격

### 가. 응시결격사유(공통)

###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거나,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 및 제51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당해 최종시험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 등을 할 수 없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나. 자격 및 경력제한

1) 공통 응시요건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 【법무 분야】는 운전면허 소지여부와 관계없음.

2)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분야별 응시요건(당해 최종시험일 기준)

시험	분야	계급	자격(면허) 및 경력 제한
경력경쟁 채용 시험	구급 일반	지방 소방사	<p>○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li> <li>-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li> </ul> <p>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p> <p>②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7조의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p> <p>③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경력</p> <p>④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경력</p> <p>⑤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p> <p>⑥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p> <p>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p> <p>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 사회복지무원(공익근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복무 확인서 필요)로 근무한 경력</p> <p>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p> <p>⑩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p>
	구조	지방 소방사	<p>○ 군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역자 또는 최종면접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p> <p>① 특수전부대(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p> <p>②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여단, 특공연대,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회사 24특입대대, 헌병특수임무대</p> <p>③ 기타 특수전부대 :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1부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장의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 등 증명서 제출</p>

시험	분야	계급	자격(면허) 및 경력 제한
경력경쟁 채용 시험	자동차 운전	지 방 소방사	○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운전실무 경력이 있는 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참조)  ※ 운전 실무경력 인정범위 ① 승차정원 16명 이상의 승합자동차 ②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③ 긴급자동차(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외) ④ 건설기계(3톤 미만의 지게차 제외) ⑤ 특수자동차(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전산	지 방 소방사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전산관련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전산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산관련 자격증이란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운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증을 말함 - 전산관련 실무경력이란 S/W개발부서·DB설계 및 운영부서에서 S/W개발·연구·운영, 정보보안의 실무경력을 말하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시스템( <a href="https://career.sw.or.kr">https://career.sw.or.kr</a> )의 경력증명서 제출
	화학	지 방 소방사	○ 화학과·응용화학과·화학공학과·정밀공업화학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학사학위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유사학과 : 해당학교 총(학)장 및 학교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운항 관리사	지 방 소방교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항관리(관제)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법무	지 방 소방경	○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사법연수원 수료) ○ 「변호사시험법」에 의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 증명서 등 자료제출 :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

### 3) 응시연령

시험구분	분야	계급	연령	해당 생년월일	비고
공개경쟁 채용시험	일반소방	지 방 소방사	18세 이상 40세 이하	1977.1.1.~2000.12.31.	
경력경쟁 채용시험	구급	지 방 소방사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7.1.1.~1998.12.31.	
	구조				
	자동차운전				
	전산				
	화학	지 방 소방교	23세 이상 40세 이하	1977.1.1.~1995.12.31.	
운항관리사					
법무	지 방 소방경				

※응시연령 연장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다. 지역제한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경력경쟁채용분야는 해당 없음)**

- 다음 ‘1)’ 또는 ‘2)’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으며, 지역제한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1)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자(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 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각 (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함.

##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인터넷 원서접수	시험구분		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2.19.(월)~2.23.(금) / 5일간 09:00~21:00  취소마감일 : 2.19(월)~2.28.(수) 21:00	제1차	필기시험	3. 21.(수)	4. 7.(토)	4. 20.(금)
	제2차	체력시험	4. 20.(금)	5. 3.(목)~ 5. 4.(금)	5. 15.(화)
	제3차	서류전형	5. 15.(화)	5. 18.(금)	6. 12.(화)
		신체검사		5. 23.(수)~ 5. 25.(금)	
		적성검사		5. 31.(목)	
제4차	면접시험	6. 12.(화)	6. 18.(월)~ 6. 19.(화)	6. 27.(수)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시험정보)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개인별 성적과 시험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시험정보)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의 성적 공개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 필기시험 합격자의 성적 공개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1) 자치단체 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 관련 문의 : 인터넷원서접수센터(☎1522-0660)

2) 필기시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보훈번호 등)를 원서접수 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가산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기재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나. 접수 및 취소시간은 09:00 ~ 21:00입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 비용

- 1) 응시수수료 : 5,000원(법무분야 7,000원)
- 2)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경우에 응시료 전액 환불
- 3)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 라. 사진등록

- 1)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 3.5cm×4.5cm입니다.
- 2)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명함용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배경사진 등 불가)
- 3)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유의사항

- 1) 응시원서 기재사항은 접수기간 내에만 수정 가능하며, 응시분야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2)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가능하며, 원서접수증으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3) 체력시험 합격자는 자격요건 등에 대한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응시원서에는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당해 필기시험 전일 기준)

###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li> <li>·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li> <li>·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최대 5%까지만 적용</li> <li>·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나~바' 참고</li> </ul>
의사상자 등 (의사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등 소지자	자격증 (면허증)	과목별 만점의 1%~5%	
	사무관리	과목별 만점의 1%~3%	

### 나. 취업지원 대상자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단계별 시험에서 과락을 면한 경우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2)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에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다. 의사상자 등 대상자

- 1)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의거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는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를 가산합니다.
- 2)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조에 따라서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 의사상자 등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나'항과 '다'항이 모두 해당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 마.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채용시험에만 적용함)

-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소지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일정 비율(1~5%, 별표6)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2) 자격(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소방직 공무원에 적용하는 가산자격증 및 가산비율(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6)

분야 \ 비율	5%	3%	1%
자격증 (면허증)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기능장 2. 1급 ~ 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3. 사업용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작정비사 4. 의사, 변호사 5. 소방시설관리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 2.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대형운전면허 4. 응급구조사(2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를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0.5할을 초과할 수 없다.

## 바.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필기시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요건을 갖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OCR 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기재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 전광역시 홈페이지(<http://gosi.daejeon.go.kr>) 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등 자격요건이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지역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마. 응시표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바.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1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사.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태블릿PC, 스마트시계,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아. 체력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차. 답안지 작성은 OC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예비표기를 한 경우는 당해 문항이 영점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카. 답안지에 수정테이프를 사용 할 수 있으며, 그 외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한 경우 해당 문항은 영점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8 기타 안내사항

- 가. 소방공무원 가산적용 자격(면허)증 세부 내역 : 붙임1
- 나. 시험문제의 출제범위
-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 붙임2
  - 2) 사회, 과학, 수학 과목의 출제범위 : 붙임3
  - 3) 소방관계법규 과목의 출제법령 : 붙임4

다.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붙임5

라.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 붙임6

마.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 : 붙임7

바.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붙임8

사.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 붙임9

아.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 붙임10

자. 법무분야 제출서류(서식) : 붙임1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방행정담당(☎ 042-270-6112, 6115) 또는 총무과 채용담당(☎ 042-270-4061-3) 또는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http://gosi.daejeon.go.kr>)의 초기화면 『시험공고』란 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소방공무원 가산적용 자격(면허)증 세부 내역

가점비율 분야	5%	3%	1%
① 자 격 증 (면허증)	<p>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기능장</p> <p>- 기술사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철도차량,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차량, 화공,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비파괴검사,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p> <p>- 기능장 :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설기계정비,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위험물,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가스, 에너지관리</p> <p>2. 1급~4급 향해사·기관사·운항사</p> <p>3.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p> <p>4. 의사, 변호사</p> <p>5. 소방시설관리사</p>	<p>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p> <p>-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 전자, 임베디드,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화재감식평가,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기상, 기상감정, 원자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p> <p>2. 5급 또는 6급 향해사·기관사</p> <p>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p> <p>4. 소방안전교육사</p>	<p>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p> <p>- 산업기사 :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업기계, 생산자동화,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화약류제조, 위험물,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기기,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화재감식평가,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p> <p>- 기능사 : 거푸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실내건축, 운수운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기계정비, 생산자동화, 반도체장비유지보수, 철도차량정비,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전산응용조선제도,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화학분석, 위험물, 전기, 철도전기신호, 광학,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자캐드, 정보기기응용, 정보처리,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가스,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p> <p>2.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p> <p>3. 제1종특수트레이더면허, 제1종대형운전면허</p> <p>4. 응급구조사(2급)</p>
②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중직무분야」 참조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면허)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는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①+② 합산, 단, 5%초과시 5%만 가점)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분 야		내 용
소방조직	1) 소방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의 발전 과정</li> <li>-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li> <li>-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li> <li>-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li> <li>-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검정)</li> </ul>
	2) 소방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li> <li>-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li> <li>- 위험물 안전관리</li> <li>-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li> <li>-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li> </ul>
재난관리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의 특징과 유형</li> <li>-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li> </ul>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li> <li>- 긴급구조</li> <li>-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li> </ul>
연소이론	1) 연소개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치</li> <li>- 연소의 조건 및 형태</li> <li>- 발화의 조건 및 과정</li> </ul>
	2) 연기 및 화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기의 정의, - 연소 가스</li> <li>-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li> <li>-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li> </ul>
	3) 폭발개요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발의 조건</li> <li>-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li> <li>-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li> <li>- 폭연과 폭굉</li> <li>- 가스·분진·분해 폭발</li> <li>-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li> </ul>

분 야		내 용
화재이론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2) 건물화재의 성상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3) 위험물화재의 성상	- 위험물의 류별(제1류~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4) 화재조사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소화이론	1) 소화 원리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질식·제거·부족매 효과)별 소화수단
	2) 소화약제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3) 소방시설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붙임3]

## 사회 · 과학 · 수학 과목의 출제범위

과 목	세부과목 및 출제범위
사 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수 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

[붙임4]

## 소방관계법규 과목의 출제 법령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여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여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여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cm)	남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여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오래 달리기 (회)	남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 체력시험은 위 6개 종목의 만점 60점중 3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격됩니다.

##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악 력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li> <li>○ 측정 단위 : kg</li> <li>○ 측정 방법 :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li> </ul>
배 근 력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 장비 : 배근력계</li> <li>○ 측정 단위 : kg</li> <li>○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최적으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li> </ul>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 장비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li> <li>○ 측정 단위 : cm</li> <li>○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li> <li>-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li> <li>-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뺀친다.</li> <li>-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li> <li>-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li> <li>-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li> </ul> </li> <li>※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뺐혔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li> </ul>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제자리 멀리뛰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멀리뛰기 측정판</li> <li>○ 측정 기록 : cm</li> <li>○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li> </ul>
윗몸 일으키기  (회/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li> <li>○ 측정 기록 : 회</li> <li>○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li> </ul>
왕복오래 달리기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li> <li>- 음량이 적절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li> <li>-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li> <li>- 녹음 CD : 별도</li> </ul> </li> <li>○ 측정 기록 : 단위(회)</li> <li>○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m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li> <li>-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li> <li>-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li> <li>-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li> <li>-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li> <li>-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li> <li>-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li> </ul> </li> </ul>

비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

###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대전광역시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6호 관련,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한 약물 및 방법은 금지됩니다(붙임 8 참고)

###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대전광역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전광역시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 일자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약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 붙임 1. 응시자 대상 검사 동의서(서식 1)  
2. 응시자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서식 2)



##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명: _____	2. 성별: 여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3. 생년월일: _____	4. 응시번호: _____
5. 핸드폰: _____	6. 이메일: _____

###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_\_\_\_\_

\_\_\_\_\_

\_\_\_\_\_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십시오

\_\_\_\_\_

\_\_\_\_\_

\_\_\_\_\_

※ 진단 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b>치료기간</b> duration of treatment:	1회 <input type="checkbox"/> 응급 <input type="checkbox"/> 기간(주/월) _____
---------------------------------------	--

####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 \_\_\_\_\_ 전공분야: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이메일: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 \_\_\_\_\_ 날짜: \_\_\_\_\_

부모/보호자 서명: \_\_\_\_\_ 날짜: \_\_\_\_\_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오.

##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1 금지약물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1)대사물질

#####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 드로스타논론(drostanolone),
- ▶ 메티놀론(methenolone)
- ▶ 메타스테론(methasterone)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 ▶ 스타노졸롤(stanozolol)
- ▶ 1-테스토스테론(1-testosterone)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 나. 기타 동화작용제 : 클렌부테롤(Clenbuterol)

#### 2. 이뇨제 : 총 3종

- ▶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hydrochlorothiazide)
- ▶ 클로로티아지드(chlorothiazide)
- ▶ 푸로세마이드(furosemide)

#### 3. 흥분제 : 총 3종

- ▶ 메틸헥산아민(methylhexaneamine, dimethylpentylamine))
- ▶ 메틸 에페드린(methylephedrine)
- ▶ 에페드린(ephedrine)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1) 대사물질 :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 4. 마약류 : 총 11종

- ▶ 부프레노르핀(Buprenorphine)
- ▶ 텍스트로모라미드(dextromoramide)
- ▶ 헤로인(diamorphine, heroin)
- ▶ 펜타닐(fentanyl) 및 유도체
- ▶ 히드로모르폰(hydromorphone)
- ▶ 메타돈(methadone)
- ▶ 모르핀(morphine)
- ▶ 옥시코돈(oxycodone)
- ▶ 옥시몰론(oxymorphone)
- ▶ 펜타조신(pentazocine)
- ▶ 페티딘(pethidine)

## 2

### 금지방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구 분	내 용
1. 일반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회다리아병·트리빠노썸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인후기관계통	가. 화제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장직, 음식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혈관 및 순환기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 장기 및 내장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7. 생식 비뇨기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구 분	내 용
9. 혈액 또는 조혈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12. 귀	가. 두 귀의 교정청력이 각각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가.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3 미만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14. 정신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5. 혈압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16. 운동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학교연락처		응시자연락처 (휴대폰)			
학교명		학과 (전공)		졸업 일자	년    월    일

위 사람이 전공한 학과는 2018년도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에 기재된 \_\_\_\_\_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담당자	(직)	성명	(인)
	(전화)		

2018.    .    .

총(학)장 (직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 [법무] 분야 제출서류

## 이 력 서

사진부착

### □ 개인신상

성명	한글	성 별		남 / 여	
	한자	생년월일		( 세 )	
현 주소					
현 소속		기관 및 부서 :		직위 :	
연 락 처	자 택	사무실	휴대폰	E-MAIL	
	병 역		기타사항		
		군필여부			
		최종계급			

### □ 직무관련 정보

구 분	내 용
응시직위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취지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그리고 응시직위에 대한 소견·응시취지·직무수행 방향·비전 등을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배경

구 분	내 용				
	학 교 명	입학년월	졸업년월	전 공	학 위
학력 및 전공					
논문 저술 賞 등					

□ 기술 및 자격

구 분	내 용	
	종 류	등 록 번 호
자격증		
어 학	종 류	점수 또는 수준
기타 보유 자격 또는 기술		



## **붙임** 소방공무원 채용관련 법규

### □ 소방공무원법

제6조(신규채용) ①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다만, 소방위·지방소방위의 신규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이하 "소방간부후보생"이라 한다)으로서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 중에서 한다. <개정 2014.6.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2.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계급,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의용소방대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지역과 그 승진 및 전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제9조(시험실시기관) ③ 지방소방경이하의 신규채용시험과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에의 승진시험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③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분야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2014.12.9.>

제34조(시험실시권) ③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의 문제출제를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문제출제를 위한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와 중앙소방학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0.12.27, 2013.10.30.>

제35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실시기관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는 소방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 7일전까지

그 변경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시험의 방법)**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 필기 시험·체력시험·신체검사·면접시험·실기시험과 서류전형에 의한다. <개정 2010.12.27>

1. 필기시험 :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 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체력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근력·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신체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작성한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할 수 있다.
4. 면접시험 : 인성 또는 적성검사, 정밀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실기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기 등의 방법에 따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방법·합격자의 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중앙소방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37조(시험의 구분등)**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사·지방소방사의 경우에는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1.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3. 제3차시험 : 체력시험
4. 제4차시험 : 신체검사
5. 제5차시험 :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3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신체검사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다만,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제2호와 제3호의 방법으로 소방정·지방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채용하려는 경우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6.4.26., 1989.2.28., 1995.12.29., 2005.3.31., 2006.12.21., 2010.12.27., 2014.12.9., 2015.5.6.>

2. 법 제6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체력시험·면접시험과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채용시험의 특전)** ①소방업무와 관련있는 자격증(면허증) 및 사무관리자격증의 소지자가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또는 소방사·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0.5할 이내를 최고점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소방업무 관련 자격증(면허증) 분야 및 사무관리자격증 분야의 가점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각 분야 내에서 2 이상의 자격증(면허증) 등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03.1.20, 2008.12.31, 2010.12.27., 2013.3.23., 2014.1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2.9.28.>

**제43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①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별표2와 같다. <개정 1999.5.10>

③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와 체력시험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④소방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 또는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증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03.1.20, 2005.3.31, 2006.5.30>

⑤임용권자는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소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도 제4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3.1.20., 2014.12.9.>

**제44조(시험과목)**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고,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으며,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은 별표 6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제45조(출제수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 및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있어서는 소방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소방장·지방소방장 및 소방교·지방소방교에 있어서는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소방사·지방소방사에 있어서는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제3차시험은 6개 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3. 제4차시험은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체력시험과 신체검사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9.>

③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④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4.12.9., 2015.5.6.>

1. 제37조제1항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제38조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필기시험성적(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7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1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실기시험을 병행할 때에는 이를 포함한 점수를 말한다)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2. 제39조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다. 필기시험·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적 7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1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⑤ 임용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제46조의2(소방사 및 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 득점의 산출방법)** ① 소방사 및 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별표 7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된 점수(이하 "조정점수"라 한다)로 한다.

② 제42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9.28]

**제47조(동점자의 합격결정)** 공개경쟁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결정은 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개정 2003.1.20., 2014.12.9.>

**제49조(응시수수료)**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8.25>

3. 소방교·지방소방교이하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 일반직 8·9급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국민안전처장관 및 중앙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내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10.30., 2014.11.19.>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2014.11.19.>

**제51조(부정 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5.5.6.>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신설 2015.5.6.>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5.5.6.>

④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⑤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⑥ 시험실시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5.5.6.>

## □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3조(응시자격등의 기준) 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제2항 각 호 의

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5.1.9.>

⑥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경쟁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예정일,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임용권자의 시험요구일이 속한 연도에 영 별표 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하는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⑦영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6.12.21, 2011.1.3>

⑨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원활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당해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시·도내의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⑩「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소방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제23조의2(체력시험의 평가기준 및 방법)**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체력시험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별표 7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력시험의 방법 등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4조(채용시험의 특전)**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과 소방사·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자격증(면허증)·사무관리 분야별 가점비율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3.1.28, 2011.1.3>

**제27조(시험위원의 수등)**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에는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3인 내지 5인으로 하고,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위원은 3인이상으로 하되,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의 명단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신체검사)** ①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 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정밀검사 또는 재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의 전일까지 나와야 한다.

**제7조(체력검사)** ①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체력시험은 별표 4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제8조(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은 제1단계 집단면접과 제2단계 개별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면접시험의 평가요소별 배점기준, 면접위원의 구성, 평가방법 등은 별표5의

소방공무원 면접시험기준에 따른다.

③면접시험 평가는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①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병역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6.4, 2013.7.16>

② 현역 복무 중에 있는 사람(「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이 전역 예정일(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소집해제 예정일을 말한다)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대군인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3.6.4>

③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④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를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보다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응시연령 상한 연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 2015.12.22.>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적용대상 : 6급이하 일반직(연구지도직 제외), 소방직 공무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은 별표 8과 같다.[전문개정 2009.8.13.]

제50조(특별채용대상일반직공무원등)①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이란 별표 8의2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하는 채용비율은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와 「국가공무원법」 제6조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시하는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28.]

##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③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7. 지방공무원(일반직, 임기제, 별정직, 소방직) 및 청원경찰 등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

제17조(소방본부에 두는 과) ①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예방안전과·대응관리과 및 119종합상황실을 둔다.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조정
2. 인사, 상훈, 채용, 복무, 보안, 행사 및 서무에 관한 사항

3. 소방조직 및 정·현원 관리
4. 소방력 조사 및 기준책정
5. 소방행정관련 주요행사에 관한 사항
6. 제도개선 및 인사관련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7. 맞춤형복지,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직원복지에 관한 사항
8. 소방관서 신설·증설 등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9. 소방행정통계 및 혁신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10. BSC 등 성과관리 및 업무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11. 소방비위 예방대책 추진 지도·감독
12. 소방업무 감찰
13. 소방공무원 징계요구 및 훈계·소송(소청)사건 처리
14.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지요원 인사·복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15.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6. 소방업무 상급기관 감사 수감
17. 물품의 관리·출납·보관
18. 공유재산 취득·관리 및 지도·감독
19. 소방예산 편성·운영·결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0. 소방장비(차량) 관리 및 유지관리
21. 소방활동 안전위험요소 평가분석
22. 소방공무원 체력측정 및 체력관리업무
23. 현장활동 및 교육훈련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24. 안전수칙 현장점검관 및 현장활동 안전책임자 활동
25. 안전사고 조사·재발방지·사례분석·심리분석 업무
26. 소방공무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관리
27. 특수건강검진 등 소방공무원 보건관리
28.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 및 건강관리계획 수립·시행
29.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30. 겸직허가 및 외부강의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31.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공모  
문안

공고  
문안

기본  
방침

기본  
방침

선발  
인원

선발  
인원

가점  
자격

가점  
자격

출제  
범위

출제  
범위

체력  
평가

체력  
평가

관련  
법규

관련  
법규

시험  
요구

시험  
요구